

부산지방법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3415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2. 4.

주 문

1.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21. 10. 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1. 1. 접수 제140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오세영

별지